

# “2007 이주민 자녀의 인권 현주소”

- 현장사례와 관련정책 중심으로 -

2007. 5. 22.

국가인권위원회

## 포럼 일정

사회: 최영애 위원장(이주인권포럼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 오프닝 [14:00~14:05]

- 참석자 소개

### ♣ 청소년 사례발표 [14:05~14:20]

- 이주민 사례/따와
- 새터민 사례/김은주

### ♣ 발 제 [14:20~15:20]

- 이주노동자 자녀의 적응과 정체성/이강애 교감
- 장수민들레 교실에서 만난 아이들/이현선 소장
- 새터민 청소년에 관한 몇 가지 질문/ 조명숙 교감

### ♣ 정부부처 정책소개 [15:20~16:40]

- 이민자 2세 사회통합 정책/법무부 하용국 사무관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 지원정책/여성가족부 이금순
-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제도/법무부 전승호 사무관
- '07 새터민 청소년 지원계획/교육부 김형기 사무관

### ♣ 휴 식 [16:40~16:50]

### ♣ 토론자 토론

- 한건수 교수(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 류혜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 이우영 교수(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목 차

<b>1. 청소년 사례 발표문</b> .....	<b>1</b>
○ 새터민 사례 .....	1
<b>2. 발 제 문</b> .....	<b>4</b>
가. 이주노동자 자녀의 적응과 정체성 .....	4
나. 장수민들레 교실에서 만난 아이들 .....	12
다. 장수민들레 교실에서 만난 아이들 .....	27
<b>3. 정부정책</b> .....	<b>34</b>
가. 이민자2세 사회통합 정책(법무부) .....	34
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 지원정책(여성부) ....	45
다.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제도(통일부) .....	50
라. ‘07 새터민 청소년 지원 계획(교육부) .....	55
<b>4. 토 론 문</b> .....	<b>68</b>
가. 다민족, 다문화 사회와 교육 .....	68
나. 이주민 자녀의 교육권 .....	73
다. 새터민청소년의 인권 .....	76

# 청소년 사례 발표문

○ 새터민 사례 ..... 1

발표자 : 김은주(동국대학교 재학)

## <새터민 사례>

김은주(동국대학교 2학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 온지도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설레임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언어를 가진 같은 민족이 사는 나라인데도 정착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남용되는 외래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부딪혀야 할 일은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반공교육을 받은 분들이거나 또는 북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새터민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저 같은 사람들은 단지 반공교육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나 우주에서 내려온 외계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호기심은 있으나 그 호기심도 단지 반짝하는 순간에 지나지 않았고 나중에는 우리도 살기 힘든데 왜 자꾸 내려오나 라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북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제 앞에서 북에 대한 나쁜 얘기나 새터민출신들을 비하하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로만 듣던 북한 친구를 가까이에 두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만난 사람들과 어느 기회에 새터민에 관한 얘기라도 나오게 되면 제 과거를 모르는 그들은 스스럼없이 새터민에 대한 차별적인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정부가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무엇을 더 원 하냐는 식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심정은 참으로 형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나쁘다고도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저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편으론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진 합법적인 국민이라고 기뻐했던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에겐 귀찮은 손님 같은 존재구나 라는 느낌 때문에 씩씩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북한을 떠나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오는 새터민 출신들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어떻게 하면 무사히 한국 땅을 밟게 할 수있을까가 중요한 사안이었다면 지금은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 같은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단 시간에 끝날 일이 아니기에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터민 출신 청소년들에 대한 반짝 했다 사라지는 외부의 관심은 오히려 역작용만 일으킬 뿐 이라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끊임없고 지속적인 관심은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 아이부터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까지 쭉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터민 청소년들이 배움에 있어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야 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공부하고 있는 남한출신의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마음의 빗장을 열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새터민출신 청소년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행착오들이 결코 아무 쓸모없는 시간낭비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고 어두웠던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 우리인생을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만들어 줄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 발 제 문

1. 이주노동자 자녀의 적응과 정체성 ..... 4

발제자 : 이강애 (제한몽골학교 교감)

2. 장수민들레 교실에서 만난 아이들 ..... 12

발제자 : 이현선 (장수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소장)

3. 새터민 청소년에 관한 몇 가지 인권 문제 ..... 27

발제자 : 조명숙 (여명학교 교감, 자유터 학교장)

## <이주노동자 자녀의 적응과 정체성>

재한몽골학교 교감 이 강 애

### 가. 들어가는 말

미국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사건은 32명을 살해한 가해자가 1.5세대 이주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는 이국땅에서 돈벌이에 바쁜 부모와 대화가 단절되고 주변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였으며 정체성의 혼란 등으로 정신적 질환을 겪다가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50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와 있고, 국제결혼을 또한 2005년 14%에서 2006년 18%에 이르도록 급격히 늘고 있어 이미 단일민족사회가 아닌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들어섰다. 이미 우리 곁에는 다수의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와있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다. 이들 또한 부모의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있으며 우리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 심한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이 먼 나라 미국에서의 일만이 아니라는 각성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시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 나. 이주자녀의 현황과 문제점

#### 1. 이주노동자 자녀의 현황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의 인구규모는 법무부 등록 외국인 중 취학 연령대는 17,287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일반학교 재학생은 1,574명이다. 외국인 재학생의 국가별 분포는 일본 24.4%(386명), 몽골 21.3%(338명), 미국 17.2%(273명), 중국 2.8%(45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대다수가 서울(35%), 경기(31%)지역 학교에 재학 중이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의 자녀들은 인구를 정확히 통계 낼 수는 없고 추정 중에만 있는데, 그 이유는 현행법상 이주노동자가 자녀나 가족을 동반해서 입국할 수 없어, 대부분 비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자녀를 입국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가 브로커를 통해 입국할 경우 별도의 여권 없이 브로커의 여권에 동반자녀로 기재된 경우가 많아 출입국 현황을 파악할 자료가 없다.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일본 이외에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 인재학생은 몽골 출신의 재학생이 많은데, 이는 이주노동자의 자녀 대부분은 몽골아이들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몽골인들은 가족중심적인 생활방식이 강하여 노동자로 있으면서도 아이들을 이주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상황은 재한몽골학교의 설립 배경이기도 하다.

## 2. 문제점

현재 국내에 와있는 이주노동자 자녀들과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은 국내 교육환경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그리고 우리의 폐쇄적 사회구조와 사회적 무관심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다. 지금과 같은 폐쇄적 사회구조와 편견, 차별 등은 제2의 조승희를 키우는 여지가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청소년의 문제점을 재한몽골학교(이하 몽골학교)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사례1

오랑거(여,15세)

한국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바로 한국학교에 2학년으로 편입하여 4학년까지 다녔으나, 아이들의 심한 놀림과 따돌림 심지어 계단에서 밀어내어 앞니가 부러지는 등의 차별을 경험한 뒤 몽골학교로 전학 옴. 이 아이는 한국학교에서 심한 편견과 차별을 당하면서 '내가 왜 몽골에서 태어났을까 차라리 한국이나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열등감과 함께 빨리 몽골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러나 몽골학교에 와서 자국의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외로움에서 벗어났고 몽골역사와 칭기스칸에 대하여 배우면서 몽골인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현

재 이 아이는 몽골학교 8학년에 재학 중이며 한국어는 물론 몽골교과를 비롯한 전 교과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매사에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위의 사례를 통해 보듯이 매우 많은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따돌림을 경험하고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그로인한 소외감과 열등감,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 사례2

설령거(여,14세) 또는 앵흐만다흐(남,13세)-한국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5학년을 다니면서 몽골어를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는 국적불명의 아이가 됨(몽골말은 겨우 하였지만). 부모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몽골학교를 찾아옴. 그 이유인즉 언젠가는 몽골로 돌아가야 하는데 몽골인도 한국인도 아닌 아이를 보며 불안감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며 지내다가 몽골학교를 알게 되어 찾아와 입학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처음 몽골학교를 찾았을 때 아이는 매우 불안해 보였고 무언지 모르게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후 아이는 몽골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표정도 밝아졌을 뿐 아니라 여느 또래의 아이들처럼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정체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건전하고 견고한 인생의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 사례3

인근학교 학생들과의 다툼으로 지구대(파출소)에서 학교에 찾아온 경우도 있었다. 다툼의 시작은 한국아이들과 몽골아이들의 소통의 문제로 오해가 생겨 일어난 것인데 결국은 한국아이들이 파출소에 고발하여 파출소에서 나온 것이다. 아이들은 일방적인 가해자로 오인 받아 매우 억울해 하였으며, 이국 땅이니 억울해도 참아야한다는 몽골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고 이 아이들이 많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 사례4

연극을 통해 자신들 얘기 표현 "설렁거"(무지개)-무지개의 나라에 꿈과 기대를 갖고 찾아왔지만 이 아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고생하는 부모의 처절한 모습과 한국 사람으로부터의 차별과 편견이었고 그래서 한국이 싫다고 절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엔 나쁜사람만 있는게 아니고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이들을 품어준 이들이 있으므로 이 아이들의 상처난 마음과 생각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어 한국사회에 가졌던 분노의 감정을 버리고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는 것으로 연극이 마무리 됨.

연극 통해 아이들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과 본 한국인들은 아이들의 아픔에 공감하였으며 자신들의 편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연극소감을 전하였다.

위의 사례들을 통하여 국내에 와있는 이주 청소년들이 많은 소외감과 열등감, 피해의식 등의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 아이들을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제2의 조승희 사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하겠다.

## 다. 재한몽골학교의 사례

### 1. 재한몽골학교설립배경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결국 자국으로 돌아갈 아이들이다. 한국에 살기위해 온 것보다는 근로자인 부모의 의지에 의해 오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정체성은 유지되어야하며 한편으로 한국에 사는 동안 잘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므로 몽골학교에서는 이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살려주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적응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9년 설립된 이래 그 중요성을 더 절감하게 되었고 설립취지에 부합한 교육을 하고 있다.

## 2. 정체성 교육과 적응프로그램

몽골어 몽골역사 몽골수학 과학 등 중요하고 기본적인 몽골과목을 현지인 몽골교사를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바, 현재 8명의 몽골교사가 재직 중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을 이해시키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한국어는 물론 한국문화 체험교육 산업시찰 농촌체험 등 다양한 한국이해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아이들이 제대로 한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 바, 현재 자원활동가를 포함한 40여명의 교사가 이들이 교육을 위해 애쓰고 있다. 물론 영어와 컴퓨터 음악 미술을 비롯한 특기적성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체성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은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되고 자신의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며 안정되고 자신감 있게 생활하며 공부하고 있다. (정체성교육은 매우 중요하여 스웨덴의 경우 많은 국비를 들여 이주민의 정체성교육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다. 실제로 정체성교육을 한 후 이주민의 폭동 등 부정적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 사례1. 일힘바야르(남,17세)

일힘바야르는 이주노동자로 먼저 입국한 아버지를 따라 2003년 11월 입국한 후 1년 3개월 동안 방안에서 TV만 보고 지내 입국할 때 50kg이었던 몸무게가 100kg으로 늘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아이가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데다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터에서 일하고 있던터라 발벗고 아이의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1년 3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더 이상 아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여긴 아버지가 이곳저곳을 수소문한 끝에 몽골학교를 알게 되어 2005년 2월 본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 아이 역시 처음 모습이 매우 우둔해보였고 위축이 되어있었으나 차츰 학교생활에 익숙해지고 본래 밝은 성격을 되찾아 2006년 7월 9학년을 졸업할 때는 누구보다 교사들의 사랑을 받으며 모범적인 학생이 되어 있었다. 그 아이와 부모가 고등학교에 가길 원했으므로 본교에서 인근 중학교로의 편입학을 도왔으며 마침내는 중학 졸업을 인정받고 고등학교를 배정받아 현재는 서울의 S공업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만약 일힘바야르가 여전히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면 지금쯤 폐인이 되었거나 비행청소년으로 전락해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한국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이주청소년들이 어울려 다니며 도적질 등을 하다가 잡혀간 사례를 여러 차례 듣고 있다.

## 사례2. 다와남(남,17세)

다와남은 한국인과 재혼한 엄마를 따라 한국에 오게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다. 지난 4월 교내 백일장에서 당선된 아이의 자작시를 소개한다.

### 학교 생활 (자작시)

타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몽골을 떠나  
먼 곳에 왔을 때에

조국을 그리워하고  
가족이 보고 싶어도  
이 나라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소중한 일이라고 하신  
어머니의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새기며  
곰곰히 생각한다.

앞에 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전진 할 수가 없다.

이 교훈을 잘 깨닫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옳고  
어머니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르친다.  
이렇게 나는 학교를 찾았다

한국 학교에 다니고 싶어도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한다.

여기저기 전화 걸고  
인터넷에서도 찾았고  
찾으면 발견한다는 사실  
되돌아가지 않게 공부를 하게 되었다.

한 달 후에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재한몽골학교라는 이름  
무지개 색깔로 마중했다

동창 친구들의 시끄러운 소리  
정말로 귀에 좋게 들렸다  
기운이 생기고 앞날이 밝아졌다

또한 재한몽골학교는  
나처럼 집이 멀리 있는 학생을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하고  
편하게 해준다.

다음 날로부터

기숙사에서 살고

학교를 다니게 될 때에

기분이 좋았다

첫날 교실에 들어갔을 때에

반 친구들이 친하게 마중했으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물어보고

차츰차츰 학교생활에 익숙했다

수업이 끝나면 멀리 갈 필요 없이

몇 분 걸리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고

바쁜 일상생활이 계속된다.

기숙사 생활에 대하여 말하면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 규칙을

꼭 지켜야 하지만

우리는 가끔 그 규칙을 어긴다.

노는 시간에 모두 모여서

웃고 즐겁게 놀고

운동장에 가서 재미있고 놀고

행복과 기쁨이 넘쳐서 돌아온다.

저녁 식사가 될 때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친구들과 같이 앉아서

맛있게 먹는 것이 좋지 않는가!

숙제 시간이 될 때에

불이 켜진 방에 모두 앉아서

조용한 방에서 책을 읽고

조용하게 숙제를 하고

저녁 청소 당번이 청소를 하며

이불을 깔고 자려고 누울 때에

푸른 하늘에 달이 빛나고

창문으로 달빛이 비출 때에

기숙사 생활이

연속되어서

금요일에 되면

학생들이 기숙사를 두고

집을 향하여 한두 명씩

서로 친하게 이야기를 하며

기숙사 학생들이 돌아갈 때에

기숙사를 지켜서 선생님이 남는다.

집에서 실컷 쉰 학생들이

이틀이 지나고 돌아올 때에

바쁜 생활이 벌써 시작하고

기쁨과 행복이 찾아온다.

(끝)

위의 시에서 보듯이 아이는 꿈과 기대를 가지고 한국에 왔고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였으나 막상 갈 곳이 없어 이리저리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공부할 학교를 찾다가 '재한몽골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무지개"를 발견한 것과 같다고 표현하였다. 아이는 순수한 몽골의 혈통을 지니고 있

지만 엄연한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다. 이 아이는 앞으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제몫을 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재한몽골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 함께 한국에의 적응교육을 받은 후엔 자연스럽게 한국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될 것이다.

재한몽골학교에선 위의 사례 이외에 매우 많은 긍정적인 사례를 갖고 있다. 낯선 땅에서 청소년기를 보내야 하는 아이들이 한국사회에 거부감없이 잘 적응하며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이주노동자의 자녀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한국사회 혹은 한국 학교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가 보고 싶고 부모의 의지를 따라 낯선 땅에 오게 된 이들이 받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충격이 얼마나 크겠는가!

## 라. 나가는 말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비롯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잘 돌보고 교육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절실하다. 그런 측면에서 몽골학교와 같은 대안학교는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이주청소년들의 정체성확립과 우리사회에의 적응교육이 모범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지원과 사회적 관심 그리고 자원 활동가들의 활발한 참여가 매우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이주청소년들이 우리사회의 냉대와 차별과 편견 속에서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키우지 않도록,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있다는 것이다.

## 〈장수민들레 교실에서 만난 아이들〉

장수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소장 이현선

### 1. 들어가는 말

우리가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은 이제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변화는 이제 우리의 시대의 지표이자 일상이다. '빠른 변화'를 동반한 '놀라운 소식'들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그러한 빠른 변화들을 그저 관망할 수만은 없는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가깝게는 이웃에게서, 혹은 내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목과할 수만은 없는 우리사회의 변화중 하나가 국제결혼이민자여성의 급증현상이다. 국제결혼이민자여성들은 주로 아시아국가 출신들이 많고 그들은 한국인 남성과 혼인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 그들은 아이를 낳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우리의 이웃이자 우리의 친구들이다. 요즘은 도시에서도 국제결혼이민자여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농촌에서의 이러한 현상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최근에도 결혼을 통하여 이주해오는 여성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주여성의 일 세대라 할 수 있는 국제결혼가족들은 아이가 이미 육아나 유아기를 지나 제도교육권으로 진입한 상태이다. 그럼 우리사회는 이들 국제결혼가족들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고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사회와 가족안에서 이주여성들의 삶의 조건과 현실은 어떠한가? 이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받고 있고 또 보호해야 할 것인가? 한편으로는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점차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의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등은 어떠한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사회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나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우리사회가 편견 없이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순히 우리가 다문화사회에 살고 있다는 추상적인 개념인식 수준의 당위적인 대응을 할 시기는 지났다고 본다. 이제 우리사회는 이러한 결혼이민자가족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실천으로 대답해야 할 때인 것이다. 오늘도 우리사회 어느 후미진 곳에서 머루처럼 맑은 눈빛을 한 어린 존재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피부색이 좀 다르다고 해서 말투가 좀 어눌하다고 해서 소외받고 '왕따'당하며 상처받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 2. 우리의 문제의식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다양화 하면서 이제 우리사회는 결혼이민자가족의 존재를 사회적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1990에서 2005년 사이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은 159,942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늘어날 추세이다. 2005년의 국제결혼은 총 결혼 건수의 13.6%로 100명 가운데 13명이 외국인과 결혼하였으며 국제결혼 중 외국여성과의 결혼은 72%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지역은 더 많은 수의 남성이 이주여성들과 결혼한다. 지난해 12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농림어업 종사자(남자)의 경우 총 결혼 8,027건 중 국제결혼이 2,885건으로 35.9%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화, 빈부격차의 심화, 심각한 성비불균형, 만혼경향의 확산, 농촌의 폐쇄화등 다양한 원인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는 2000년대 초에는 중국, 일본, 필리핀출신이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몽골, 태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다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수지역은 초기에는 일본과 조선족이 많이 이주해 왔으나 얼마 전까지는 필리핀, 최근에는 베트남 이주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1990년 무렵 농촌총각장가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국내로의 결혼이주가 이제는 농촌의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정착된 것이다.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을 이루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아시아지역 출신으로 결혼 이후에도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낯설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종차별과 계급차별, 성차별등 복합적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의 농촌지역문제인 경제적 빈곤과 사회문화적 소외까지 더해져 있으므로, 어려움이 더더욱 가중되는 상황에 내몰려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총각장가 보내기운동이 시작된 지난 10여년동안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급증한 반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지원이 별로 없었기에 문제가 누적되어가고 있었다.

사실 지난 10여년동안 농촌지역사회의 변동, 여성결혼이민자의 급증과 이에 따른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출산과 성장,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권리의식의 변화등이 중첩되면서 이제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이 불가피하다. 당연히 교육이나 상담, 법률의료지원 등 실제적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대책들도 단선적이어서 여성결혼이민자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단적으로, 한국어와 한글교육문제는 단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의 지체와 사회부적응에 대한 우려와 연동되어 고려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문제나 결혼 이후에 겪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의 어려움과 고통은 아직도 우리사회 일반의 의식권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언어문제와 문화적 차이, 경제적 빈곤, 가족간의 갈등, 자녀교육문제 등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여러 요인에 휩싸여 고통을 겪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정부정책이 단편적이고 제한적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 3. '장수민들레교실'에서 만난 국제결혼이주여성가족의 현실

우리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농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고 더불어 농촌총각 문제가 난제로 등장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 방안

으로 90년대 초반부터 재중 동포인 '조선족' 처녀와 혼인이 본격적으로 주선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결혼문화의 등장이었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아시아 국가의 여성들과 농촌총각들의 국제결혼이 주선되었다. 한국에서 결혼하는 10쌍의 부부 가운데 1쌍이 국제결혼가족이라는 최근의 통계도 있다. 초기의 국제결혼은 주로 같은 민족인 재중 동포 처녀들과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아시아 각국의 외국인 여성들로 그 범위가 다양하게 넓어지고 있다.

한국사회 전형적 농업도시인 전라북도와 각 시군이 파악한 국제결혼 이주 여성 자료에 의하면,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은 2001년에 442건이었으나 2005년에는 1,385건(통계청, 2005년 기준)으로 늘었다.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세대는 1,600여 가구를 넘어섰으며 그 자녀수만 해도 2,000여명이 가깝다(전북도청자료, 2005.12말 기준). 2006년 상반기를 넘기면서,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 전체의 24% 정도가 몰려있다. 그 다음이 서울로 약 11%이며, 전라남도에 약 10%, 전라북도에 약 9%의 자녀들이 살고 있다. 전라도는 인구 대비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되었다. 결혼을 통하여 이주하여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현황은 정확한 파악이 안되고 있어서 통계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누락되거나 미파악된 결혼이민자들까지를 포함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수의 결혼이민자 가정이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 장수군의 경우에 장수군내 거주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 130여명이며 그 자녀들이 168명(2006.4월말 기준) 이라 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현장에서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이주여성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다음은 민들레교실 어느 방문 교사가 쓴 기록이다.

“우리가 그녀의 집을 처음 방문한 날, 그녀는 여섯 살, 네 살, 두 살 난 세 남매와 방안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우리가 두 번째 방문한 그날도 그들은 텔레비전을 계속 시청하고 있었다. 필리핀에서 결혼을 통하여 장수에 정착한 그녀는 평소 집안에서 아이들하고만 생활하고 있었다. 서투른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 쓰며 급하면 타갈로그어로 혼자서 이야기 한다. 한동네에서 따로 살고 있는 시어머니는 우리가 한국어를 교육한다고 하니 ‘남편에게 잘 하도록 알려주라’는 교육을 부탁했다.

그녀의 남편은 약간의 농사를 짓고 생계를 위해 별목 일을 하러 다니느라 늘 집에 없었다. 그녀는 한국에 들어온 지 칠년이 넘었지만 한국어 실력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그녀는 거의 방치되고 있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이웃과 왕래도 없었고 하루 몇 차례 드나들 뿐인 시내버스를 타고 외출하는 일도 드물었다. 처음 우리와 대화하며 낯설어하고 고민스러워 하던 그녀가 가끔씩 커피 한잔씩 내오며 자주 울었다. 남편의 나라의 언어인 한국어와 만국의 공통어라는 영어, 그리고 그녀의 모국어인 타갈로그어 등 세 개의 언어를 모두 다 쓰고 있는 그녀였지만 잘 통하지 않음에 절망하고 있었다. 우리는 한국사회가 다른 문화에 대해서 폐쇄적임을 다시 느끼며 더욱 개방적인 사회로 변화해야 함을 절감하고 있다. 우리가 사회문화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체험에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녀에게 한국정부가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으니 관심 있게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전에 더욱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녀답게 살아야 함을 강조했다.

아이들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큰딸이 곧 일곱 살이 되지만 또래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우리와 어울려 있을 때도 말을 못했고 말이 없었다. 발음이 부정확하고 읽기가 전혀 안되고 쓰기도 전혀 안된다. 궁여지책으로 보내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늘 힘없이 지쳐 돌아온단다. 특히 발음 때문에 곧 입학할 학교에서 왕따 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더욱 한국어 사용을 기피할 것이다. 언어는 단문 표현도 거의 안되고 단어만 쓰고 있다. 네 살 난 둘째도 거의 말이 없다. 주로 함께 생활하는 어머니의 상태가 고스란히 전수되고 있는 셈이다. 이 아이들의 특수한 상태와 장래를 생각하면 외국인부모를 둔 2세들의 초기 언어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필요하다. 학교에 가게 되면 학교 안에서 만나는 친구들부터 그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아이들은 우리들 이웃집 아이이다. 어찌면 앞으로 농촌에는 이 아이들만이 남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들은 미래의 농촌사회를 구성하는 실제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를 만나면 며느리와 손주들의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 시어머니의 긴 푸념이 이어졌다. 이런저런 주문이 이어졌다. 아마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해할 능력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한국어

를 가르쳐 주고 싶어하고 문화차이를 이해시켜 주고 싶어하고, 또한 자녀의 삼중언어교육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말했다. 우리가 보기에 지금의 상태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다만 가족간의 친밀한 관계가 한국어 실력 향상에서 결정적이란 점과 자녀들의 이후 교육에도 직결된다는 점을 지적해 주었다. 매주 진행되는 한국어교실인 민들레아카데미에 잘 나오지 못하는 그녀를 위하여 교재를 주고 혼자서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남편과 시대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할 필요성과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부모로서의 역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우선 강조하였다.

우리가 그녀는 이미 아이들에게 세 개의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엄마임을 인식시켜 주니 스스로 깜짝 놀랐다.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건강한 남편이 있고 늘 관심 갖고 있는 시어머니가 계심이 행운임을 살피주니 깜짝 놀랐다. 그녀는 말이 적지만 성실하여서 한국어공부를 매우 열심히 하였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작고 왜소한 아이들이 우리에게 달려들어 영어 섞인 서툰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다.

우리가 진행되는 한국어교육은 단순한 한글 익히기를 넘어서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한국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상대방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쌍방향의 배움이 진행되도록 힘쓰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언어 속에서 한국의 가족문화와 정신세계, 관계맺음 등을 학습하는 것이다.

눈을 평평 맞으며 찾아간 어느 날, 그녀는 우리에게 소박한 스파케티 한접시와 커피 한잔을 내어 놓았다. 자신이 소중하고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며 열심히 무언가를 노력하며 살아야겠다고 말하며 웃었다. 자신의 고향과 가족들 이야기와 남편의 나라 낯선 땅 한국에서 사는 일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어찌해야 할 지, 일자리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자주 물었다. 우리는 그녀가 말할 때 그녀의 모국어인 타갈로그어를 쓰면 이방인처럼 외로웠다. 알아들을 수 없으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녀도 외로웠을 것이다. 우리도 내년에는 타갈로그어를 공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6년 겨울 어느 날.

문제는 이러한 결혼문화의 변화를 불러온 우리사회의 내부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는 우리사회의 태도이다. 국제결혼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가족을 이룬 이들 가정에 대해서 우리사회는 그 동안 너무 무관심해왔다. 몇몇 민간단체들이 각개돌파를 하듯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어 왔던 게 그나마 다행이지만, 자본과 인력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민간단체이고 보면, 문제의 해결은 늘 미봉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 미봉의 문제 가운데 가장 먼저 제기 될 수 있는 게 결혼이민자여성의 인권문제이다. 결혼이민자여성들의 인권문제는 우선 국내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연장허가 때 필요한 서류만 살펴봐도 얼마나 허술한 상태인지 알 수 있다. 혼인을 한 결혼이주여성이 국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해서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국민으로 살아가게 되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농촌으로 들어온 이주여성들은 정보의 한계와 가족의 무관심, 생활고 등으로 자신의 사회적 기본권조차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에 자녀들은 태어나서 자라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결혼이민자여성들은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서툰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표현조차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들은 이들이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핵심이 언어문제임을 인식하고 한국어교육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몇몇 아시아국가언어군 이주여성들은 최소한의 의사소통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여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변조차 변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며 학부모가 된다고, 혹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한국어교육의 시급성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응급구조'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회학적 관점의 접근방식이 필요한데, 그 기초적인 접근방식조차 한국어교육을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장수지역에서 ‘장수민들레문화교육아카데미’와 ‘찾아가는민들레교실’을 운영하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을 해 온 우리는 수많은 고민을 해왔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한국어교육을 제공할 것인가? 기존에 한국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대학이나, 그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로 교육을 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그들의 교육상태의 층이 다양하고, 실생활에서 삶의 조건도 유학생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입장과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결혼을 통해 한국사회의 일원이 이미 ‘되어’있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둘 때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기존에 있던 틀과는 다른, 그러니까 좀더 실생활적이고 그들의 처지에 합당한 방식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동안은 거의 부재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우리사회의 대응은 수동적이었다. 2005년 말부터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가 여성가족부와 농림부 등에 의해 만들어져 배부되기는 했지만, 현재까지도 그 내용의 빈약성에 대한 보안책과 부교재개발의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문제를 전적으로 우리사회의 몫으로만 돌릴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학습태도가 너무 수동적인 면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일정정도의 의사소통(가정 내의 간단한 의사소통이나 시장을 볼 수 있는 정도)이 가능한 이주여성들은 언어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언어화석화’의 오류에 빠져드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족 내에서는 비언어적신호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지만, 가족 바깥에서는 자신의 의사소통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학습의 열의가 점점 희박해져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에는 이들 여성이 가정주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육아, 농사일, 직장일 등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탓도 있다. 실제로 몇몇 여성은 남편의 무능과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책임까지 떠안고 있다. 한편 ‘여자가 문밖을 출입하면 좋을 게 없다’는 지역사회의 완고한 정서와도 이들 여성은 대응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시간적 여유 없음과 여러 장벽들로 인해 이들의 언어는 점점 화석화 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장수민들레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로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을 운영해 보기도 했지만, 단기적인 정부지원의 한계를

독자적으로 극복해보기에는 무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구체적인 교육과 상담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우리가 만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장수민들레교실에서 실천하고 있는 △ 한글교육이 아닌 한국어교육 △ 동화 정책이 아닌 다문화주의정책 △ 자녀를 잠재적 문제 집단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삼중언어교육(한국어와 어머니 나라의 모국어, 그리고 사회적 왕따를 극복하는 영어 교육) 정책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글 교육 정도가 아니라 한국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주여성들이 가장 힘들어 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한국어가 통하지 않는 것이다. 한글은 매우 과학적이고 쉬운 문자여서 여성결혼이민자들도 한글은 비교적 쉽게 읽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실제 그 한글의 의미를 아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에 대한 이해는 한국사회와 역사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 가족들에게 다문화주의를 요구해야 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소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다수 집단 문화가 이주해 와서 자신들의 문화를 소수 문화로 취급하면 저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수 문화 집단에 소수 문화 집단 사람들이 이주해 온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동화되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동화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만일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동화했다면 그것은 한국 사회의 최하층 농촌 문화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최하층 중의 최하층으로 동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빈약한 결과에 불과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을 한국 사회에 단순히 동화시킨다면 한국 사회의 최빈곤층인 농촌가족들을 다시 한 번 최빈곤층의 지위에 고정시키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해 보면, 그녀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활달하며 상당한 문화역량과 인격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이어서 그러한 강점을 잘 살려서 좌절하고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긍정적인 다문화 사회로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훨씬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주여성의 언어화석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역시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다. 아이들 교육에서 엄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하지만 국제결혼가족의 엄마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느낌이나 생각들을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없다. 그로 인해 아이들의 교육이 지체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는 민들레교실'과 '장수민들레문화교육아카데미'를 통하여 여성결혼이민자 본인과 동시에 자녀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왔다. 엄마와 아이가 동반성장 해야 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주여성 자신과 남편, 자녀, 주변가족등 국제결혼가정 자체가 통합적으로 성장해야만 이들이 온전하게 정착할 수 있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혼을 했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그야말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고하게, 그러나 불리한 사회적 조건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아이들이 별다른 대비도 없는 우리사회에 점점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 4. '장수민들레교실'에서 만난 아이들

우리 장수지역에도 국제결혼 가족 수가 130여 세대에 이르고 있다. 비율상으로 보면, 필리핀,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순이고 소수이긴 하지만 인도네시아, 태국여성도 있다. 지역사회의 이주여성가정에 대한 무관심을 그저 손 놓고 바라 볼 수만 없어 우리는 이주여성한국어교육과 함께 아이들의 교육과 상담을 같이 진행해 왔다.

국제결혼가족의 자녀들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태어났으나 한국 사회에서 방치되는 여건에 처해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아이들 상태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대부분 한국어 능력이 약간씩은 뒤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이 제도교육에서 학력이 뒤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 초기 현장을 직접 보고 있는 것이다. 부모들의 이해 부족, 정부의 방치와 교육당국의 무관심이 자녀들의 장래 문제까지 고민할 여력이 없는 국제결혼가정에 현실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녀들을 우리는 일단 세 가지 단계별 유형으로 분류해 보았다. 첫 번째 단계인 2 ~ 3세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 한국어는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제 2언어이지만, 이들 자녀에게는 모국어인 셈인데, '어머니의 혀'라는 모국어의 수혜를 이들 아이들이 받을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인 4~5세의 경우의 아이들은 극도로 조용하거나 일부는 극도로 활달하다 못해서 폭력적인 경향들이 나타난다. 이는 아이들이 다른 또래 집단과 다름을 인식한데서 오는 불안감과 미숙한 엄마의 한국어 때문인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취학아동들의 경우에는 다른 또래 집단에 비해 학습 진행이 늦어지는 현상이 보였다. 이 아이들은 자신들과 다른 (피부색이나 언어구사력) 한국인 자녀들과 있을 때는 눈에 띄게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신들과 같은(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 아이들 사이에서는 교우관계나 유대가 끈끈해서 우리는 작은 희망을 발견하기도 했다. 겉으로는 한국 부부 자녀와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녀들이 한국어 사용능력이 약간 뒤떨어진다는 사실이 과장되어서는 안된다. 한국인 부부 자녀들도 개인차이가 있어서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아이들 일반의 특성일 수도 있다. 소위 천재들도 어릴 때 언어 발달이 매우 지체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도시와 농촌 사이의 차이일수도 있다. 그래도 도농간의 차이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들에게는 극단적으로 지체되어 나타나기 쉬울 수도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사회성 발달은 동료 또래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이들 자녀들을 공동의 공간에 함께 두면 이들도 다른 아이들처럼 금방 친구가 되어 전체 공간을 휩쓸고 다니고 떠들썩한 것은 다른 아이들과 같다. 다만, 상대적으로 대화가 적은 편이고, 장난감을 공유하면서 함께 노는 면이 약간 덜 할 뿐이다. 확실한 것은 여성결혼이민자 자녀가 눈에 띄게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아이들 스스로가 여성결혼이민자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감지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극적이면서 조심스러운 경우가 많다. '민들레교실'의 경우 기본철학이 여성결혼이

민자들을 '허황옥(인도 아유타국에서 건너와 가야국의 김수로왕과 결혼한 여성)처럼 존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입장을 가졌는데도 교사진에게조차 자녀들이 눈치를 본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경우에도 조용하고 다소곳한 모습을 보여주며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가 남아 있다.

## 5. 무엇을 할 것인가?

미래의 한국 사회가 다언어 역량을 가진 다문화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모로 긍정적이다 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우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이 뒤떨어지는 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고, 또한 자녀들이 제도교육에서 일정하게 뒤처지고 소외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묘안이 별로 없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주여성가정의 복잡한 현실 속에서 자녀교육문제라는 심각한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이 어머니나라의 모국어를 익히게 해서 다언어, 다문화를 사용하는 역량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2세 교육 문제도 해결하고, 잠재적 사회문제도 해결하고, 게다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자긍심과 주체적 발전노력을 지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이중언어교육, 또는 삼중언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언어교육에서 비중은 먼저 한국어 교육, 이어 어머니의 모국어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 (소위 선진국 언어) 교육 순이다. 먼저 한국어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어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소통언어이기 때문이다. 국제결혼가족의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어가 지체되어 있다. 어머니의 한국어실력 탓도 없지는 않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제결혼을 하고 자연적으로 이중언어교육이 실행되는 가정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언어지체 현상이 여기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모국어 교육을 해야 한다. 어머니의 모국어를 교육해야 하는 이유는 자녀가 어머니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는데 필요하고, 이후에 한국과 어머니 나라 사이에 평화로운 국제 무역에도 공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결혼가족의 자녀들은 한국어 습득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지만 어머

니의 모국어 습득에서 유리한 처지에 있게 된다. 국제결혼가족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모국어를 습득하는 문제에서는 출발부터 유리한 처지에 있게 된다. 국제결혼 자녀들은 어머니가 가진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약점을 어머니가 모국어를 잘한다는 강점으로 메우어야 한다. 국제결혼 자녀들이 어머니의 모국어를 익히지 못하면 한국사회에서 '빈곤-국제결혼-자녀교육의 어려움-이등 국민의 등장'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국제결혼 자녀가 어머니의 모국어를 익히지 못하면 이들은 학교에서 조만간에 왕따를 당하면서 어머니를 원망하는 사회적 불만세력으로 자라게 될 수도 있다. 이들이 어머니의 언어를 익히지 못하면 어머니의 나라, 문화 등 어머니의 모든 것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분위기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들 자녀들은 어머니를 한국어도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영어 혹은 소위 선진국 언어인 영어, 불어, 독어, 일본어, 차이나어, 스페인어-남미어, 포르투갈-브라질어 등을 공부해야 한다. 영어등 선진국언어를 공부시켜야 하는 이유는 국제결혼 자녀들에게 만일 아버지의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만 교육시키면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집단으로 취급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에 영어등을 포함시켜서 이 국제결혼가족의 자녀들이 사회적인 소수자고립집단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강력한 다문화주의, 다언어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은 반전된다. 그런데, 항상 고려해야하는 것은 똑같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라도 모두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삼중언어 교육이 비교적 손쉬운 집단은 필리핀처럼 타갈로그어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집단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쉬운 문제이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서 결혼 이민 온 집단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일단은 영어를 제3언어로 육성하려는 관점이 요구된다는 점만 확인하자.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은 보통 한국 체류기간이 길수록 나아지는데 분기점은 현재로서는 대략 5년 정도인 것 같다. 그리고, 가족간에 화목한 분위기가 있으면 한국어 능력도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의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한국어 능력이 특별히 덜 발전되거나 외향적이어서 특별히 더 발전된 경우는 드문 것 같다. 여성결혼이민자가 내성적인 경우조차도 한국인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대단히 적극적인 편이다. 다만,

여성결혼이민자가 체류기간이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 내에 고립되어 자녀하고만 있는 경우는 한국어 능력이 뒤떨어진다. 이런 경우 심중팔구 이웃 간에 대화의 기회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여건에 있는 경우가 많다. 장수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 가정들의 경우 적지 않은 수가 마을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들의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에 상당한 어려움을 예고하는 것이다.

부모가 다문화와 이중 언어 환경에 있는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언어를 완벽하게 익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한국인이면서 외국에서 살다 와서 두 개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도 수능 시험에서 언어 영역이 어려워지면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다. 두 개의 언어를 완벽하게 익힌다는 것은 그 뿌리까지 따져보면 쉽지 않은 문제이다. 아마도 한국에서 다문화주의적인 분위기가 자리를 잡아도 '부'의 언어와 '모'의 언어가 서로 다른 국제결혼가족 자녀들의 경우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어 실력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장수민들레교실' 교사진은 처음부터 이런 사실을 우리가 삼중언어교육의 관점을 제시할 때 각 가정에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만일 이런 점이 고려되지 못하면 국제결혼 자녀들이 일반적으로 지능이 떨어져서 한국어를 잘 못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 6. 맺음말

나는 말썽을 심하게 부리는 아이를 보면 아이의 볼을 잡고 아이의 눈동자를 바라본다. 아이의 눈동자가 불안스레 떨리고 있다. 그것은 이 아이의 불안한 미래이자 우리사회의 양심의 지표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절로 감감해지는 느낌이 든다. 이 아이들의 문제는 오늘의 불안만이 문제라기보다 내일도 계속될 이 아이들의 불안한 미래와 희미해져가는 우리사회의 양심의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장수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집행해온 민들레팀은 우리지역, 나아가 우리사회의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할 것이다. 그것은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국제결혼가족의 활기찬 성장을 고민하지 않는 한국

사회의 균형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여러 다양한 모습의 우리아이들과 함께 가지 않는 우리의 미래는 절름발이가 될 것이란 생각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2007년에도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정기교육프로그램과 가족동반교육프로그램, 자녀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안정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몸 부비고 살아가는 지역에 대한 당연한 임무이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주의 가치와 실현의 중요성을 알고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족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연구자 및 활동가들과 연대하며, 여성결혼이민자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할 단위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전체의 여성결혼이민자 사업단위의 네트워크를 안정화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장수에서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름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만나는 첫 걸음을 시작한다.

모든 사회사업은 진정성의 기초위에 계획과 헌신으로부터 시작되고, 여기에 신뢰와 참여가 더해지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한다.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사업은 그녀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전제로 온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국제결혼가족의 자녀들이 이미 상당히 성장해버린 상황에서야 준비되고 있는 정부정책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프로그램이 그들 모두를 돕고 감쌀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새터민 청소년에 관한 몇 가지 인권 문제〉

조명숙(여명학교 교감, 자유터 학교장)

### I. 새터민 청소년의 인권과 차별의 문제

흑인들에게 온전한 평등이 부여되기 전 미국 시민사회에서는 백인과 흑인을 분리하지만 평등하게 대우한다면 평등한 것이 아닌가 라는 Separate but equal 논쟁이 벌어진 바 있으나, 아무리 동등하게 대우할 지라도 심지어 더 잘 대우해 준다 할지라도 사람을 분리하는 것 그 자체가 불평등이라는 결론이 승리하게 되었다.

남한 사회도 새터민들을 동정으로 대하다 문제가 생기면 분리하여 특별하게 관리하고자 한다. 한겨레학교는 새터민청소년들을 분리수용하고 특별관리하는 발상의 전형이다. 새터민들을 위한 시설과 제도에 대규모적인 경제적 투자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새터민들이 정착부작용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대상에게 책임과 비난이 쏟아지게 된다. 또한 새터민들에 대해 “같은 데 어렵다.”는 동정적인 시선과 대우도 결국 “이렇게 해 줬는데도 못하냐?”라는 평가와 실망 내지 정죄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므로 차별이 된다.

우리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그들을 다양하게 끌어안은 채 더불어 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은 채 새터민들을 분리하여 관리하려는 정책은 결국 사회구성원으로의 진입을 막고 주류에서 밀려나게 할 수 있어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도 좋지 않다.

신체적 성장기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 새터민 청소년들은 왜소한 외모를 가진 채 외모지상주의가 판치는 남한사회에 입국해서 왕따가 되고 있다. 또한 험난한 탈북과정에서 사춘기 등 정신적 성장기를 겪지 못한 새터민 청소년들은 남한에 입국하여 정서적으로 더 민감해지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그리하여 새터민 청소년들에게는 남한사회가 보여주는 사회적, 제도적 편견들의 영향이 어른들에 비해 더욱 클 수 있다.

그러므로 남한 사회가 남북의 사회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민감한 청소년기의 새터민 학생들을 이해하여 그들의 상처와 문화경험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여 그들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결국 새터민 청소년들의 인권을 신장하는 길일 것이다.

## II. 제도적 차별과 법적 안정성

### 1. 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 노출, 신분노출, 비자발급 거부

새터민들의 주민등록번호는 여자의 경우는 생년월일-225231\* 로 끝자리만 다르며, 남자의 경우는 생년월일-125231\* 로 역시 끝자리만 다르다. 이로 인해 새터민들은 중국비자 등을 신청할 때 거부가 되고 있으며 생일만 알면 끝자리 10개의 조합으로 주민등록 번호가 노출되어 주민등록 번호 도용이나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 2. 생계비 지원 규정과 담당 공무원들의 인지부족으로 새터민 청소년들의 혼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 26조)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급여한다고 하여 생계비 지원 종료 시기가 모두 다르고, 또 만 20세 이상의 새터민에게는 남한 사회 입국 후 1년 기한 동안만 생계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만 20세 이상 청소년은 1년의 생계비 지원 만기 시점이 하나원 기수마다 다르다.

이로 인해 관계기관 담당자(구청 사회복지 담당관)는 생계비 지원 만료 시점이 돌아오는 새터민에 대해서는 사전인지를 시키고 생계비 지원을 중단해야 함에도 전입 후 5년이 된 새터민과 만 20세 이상 생계비 지원 1년 기간 만료 대상자들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아 해당 년 12월 31일까지 생계비 지원을 하고 다음해에 새터민 청소년들에게 만료시점 이후 지급된 생계비를 환급하라고 하여 새터민 청소년들은 몹시 혼란을 겪고 있다.

### 3. 학력인정과 대학 입학에 대한 기준으로 인한 혼란

남북한 학제가 북한은 초등 4년 중고등 6년 총 10년제이며, 남한은 12년으로 학제 차이가 2년이 나므로 새터민 학생들이 남한의 학교에 편입될 때 혼란을 겪고 아직 그것을 메울 보충과정이 신설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대학 입학기준은 대학의 고유 권한이지만 학년 이수에 대한 규정(북한의 10학년을 이수한 학생을 고등과정 이수자로 보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음)이 달라 일선학교와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한다.

학년 연한에 맞춘 편입기준과 대학입학 제도 등의 교육지원문제를 포함하여 새터민들에 대한 지원제도가 안정적이지 않아 새터민들이 예상하여 준비할 수 없고 선처만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새터민 학생들은 늘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는 제도를 보완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제도를 정비하여 새터민들이 제도를 감안하고 예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법 자체의 충돌, 특별제도로만 운영하는 부분

새터민들에 대한 모든 사항을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은 규정이 없거나 관련 일반법 및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고 새터민들을 항구적으로 특수집단화하여 결국 소외시킬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해당하는 일반 법률로 규율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특례조항을 두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5. 한겨레 학교와 관련된 통일부 하나원의 인권침해

새터민 학생들은 “북한에서는 배고파 못 살겠고, 중국에서는 잡혀갈까 무서워서 못 살겠고, 남한에서는 몰라서 못살겠다”고 한다. 또한 의무만을 강요받고 권리와 선택을 잘 모르고 살아왔던 새터민들에게 자유선택권을 교육하여야 할 통일부 산하 새터민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새터민 청소년들에게 일반학교와 새터민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들의 정보를 차단한 채 정부가 지원하는 한겨레 학교만의 정보를 주고 선택하게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이며 자유선택권을 무시한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 Ⅲ. 사회적 편견

#### 1. 사업의 주체로서가 아닌 대상으로만 받아들여짐

복지와 교육의 대상

#### 2. 선행케이스에 대한 영향으로 권리침해

학교나 직장에서 개인의 능력의 차이와 소양의 차이가 있는데도 선행케이스 몇 건으로 새터민 모두를 평가함. “우리는 새터민 받지 않습니다.”

#### 3. 새터민(북한 출신자)에 대한 용어의 문제

북한 출신 남한인인 새터민들에 대한 용어들이 탈북자, 새터민, 북한 이탈주민, 통일인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고 불려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에 대한 용어의 문제는 남한사람들의 편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용어가 되었든지 우리 사회가 북한 출신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라면 이런 불필요한 소모전은 없을 것이다.

#### 4. 새터민들에 대한 억압적 사회 분위기

“배려 받으면 말썽 일으키지 말고 잠자코 있어라.”는 등의 표현으로 억압적이고 새터민들의 자존감을 추락시키고 있고, 문제 발생 시에는 필요 이상으로 새터민의 신분을 부각시킨다. “새터민 범죄율, 새터민 폭행...등”

### Ⅳ. 새터민 청소년들의 학교 내에서의 인격권 침해

1.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에서 소수자 약자이며 은근한 왕따로의 삶  
“친구들한테 탈북자인 것 안 알려줘서 고맙다.”

2. 편견을 가진 대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질문

애가 탈북자였어요?, 북한에 이런 것 있냐?, 이런 것 먹어봤냐?

3. 새터민 청소년에게 북한에 관한 이슈나 정치적인 질문

핵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식량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4. 담당교사의 무지로 인한 문제 및 인권침해

특별전형, 학제, 전학, 지원에 대한 제도에 대한 무지

전학 시 새터민 학생들의 성적표를 보고 교사가 학생 앞에서 표정이 바뀐다.  
“반평균 깎아 먹는다.”

5. 또래 관계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

친구로서의 도움이 아닌 자원봉사를 받음

## V.원하지 않는 신분노출과 인격권침해

1. 학교, 학부모에 의해 새터민 학생들의 신분이 보호 장치 없이 노출되고 있다.

2. 각종 언론단체의 아이들의 초상권을 무시한 얼굴과 자료 공개

3. 새터민 학생이 잊고 싶고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인 과거에 대해 교사나 관계자가 물으려 한다.

“탈북 경로를 써 봐라.”, “ 중국에서 어떻게 살았냐?,” “부모님과 왜 헤어졌냐?”

새터민 청소년들은 북한에서 최악의 생존 상황과 탈출기간 동안의 심신의 외상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에 입국하였고 같은 민족이라는 동족개념과 타문화권자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평가 받는 상황과 편견에서 오는 몰이해로 힘들어 한다. 새터민들도 열심히 노력해야 겠지만 인권의 개념이나 자유와 선택, 그리고 권리에 대해 경험이 일천한 새터민들을 위한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배려는 분리해서 특별대우 하여 외로운 섬나라 왕자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터민을 “우리”로 포함시켜 함께 살아가며 그들을 통한 우리사회의 자성과 회개, 교육과 성장을 통하여 “행복하게 함께 살기”인 통일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 가정의 행복의 키는 자녀들이다. 먼저 새터민 자녀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이해받아 행복하게 하면 새터민 가족이 행복하여지고 새터민 사회가 남한에서 행복해 지고 우리도 더불어 행복해 질 수 있다.

미국에서 얼마 전 일어난 “조승희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남한 사회가 이 사건으로 인한 미국인들의 한국인들에 대한 편견을 염려하여 오버하는 동안 미국사회에서는 자성적인 반성들이 일어났고 남한사회의 현상들을 오히려 신기해했다. 그들은 “우리 이웃 조승희가 겪는 외로움을 우리가 외면하여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본질을 파악하고 자체 반성을 하고 있었다. 만약 한국사회에서 새터민으로 인한 조승희 사건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까?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정 부 정 책

1. 이민자2세 사회통합 정책 ..... 34  
발표자: 하용국(법무부 체류정책과 사무관)
  
2.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 지원정책 ..... 45  
발표자: 이금순(여성가족부 가족정책팀 사무관)
  
3.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제도 ..... 50  
발표자: 전승호(통일부 정착지원팀 사무관)
  
4. '07 새터민 청소년 지원계획 ..... 55  
발표자: 김형기(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사무관)

## <이민자 2세 사회통합 정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I

### “버지니아 참극”의 원인 분석

- ◆ 금번 사건의 범인인 조승희씨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증오심을 갖는 등 개인의 정신적 문제로 인해 사건을 발생시켰으나,
- ◆ 이민자 2세였던 어린 시절의 환경적 요인이 정서적 불안정을 유발시켰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고,
- ◆ 이러한 이민자 2세들의 일탈행위는 프랑스에서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했던 사례와 유사성이 있음
- ◆ 또한 조승희씨와 같이 소외당하기 쉬운 이민자 2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에 주목

### II

### 우리 나라 정책환경의 변화

-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는 '97년 말 386,972명 ⇒ '06년 말 910,149명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135%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취학 외국인 아동의 수 역시 증가 예정
- ※ 현재까지는 외국인 아동의 취학 연령이 낮지만(주로 초등학생임), 점차 사춘기 연령에 접어드는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국제 결혼이 증가하는 만큼 국제 이혼도 증가하고 있어, 혼인 파탄 가정의 자녀들의 사회 부적응 문제도 늘어날 전망이다
- 숙련 생산기능인력 영주허용 제도 시행('08.1.예정) 등으로 이민자 2세의 유형은 다양화될 예정

### Ⅲ

## 이민자 2세 정책 현황

### 개 요

- 우리 정부는 '06.5.26.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 이후 범정부적으로 외국인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다각적 정책을 추진 중
- 결혼이민자·난민·영주자격자·국적취득자 등 이민자의 자녀들에 대한 사회통합 및 인권 제고에 대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 ※ 그 부모인 이민자에 대한 통합정책도 실시
- 또한 국민과 외국인 상호간의 문화·가치 존중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도 추진 중
- '07. 4. 27.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의 국회 통과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외국인정책 추진 기반 마련
- 향후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 정책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확정·추진

## 추진 현황

### ▶▶ 사회통합

- 이민자 자녀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제공 (교육부)
  - '06. 5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발표
    - ※ 혼혈아동과 교사(선배·또래)간 1:1 결연, 대학생 멘토링, 방과후학교 실시 등
  - '06. 6월 다문화교육 시범학교 지정·운영
    - ※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 학습 지도 실시 (대구 구지초등, 경북 고령 우곡초등학교)
  - '06. 11월 '다문화교육 교과서 지도 보완 자료' 발간·배포
    - ※ 교사들에게 다문화가정 교육 실태 및 다문화교육 방법론 전파
  - '07. 2월 교육과정 성취목표에 다문화교육 요소 반영 및 고시
    - 중3 도덕교과서 및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이주 노동자나 인종에 대한 차별 사례 및 개선방안 모색'을 교육성취 목표로 제시
- 이민자 자녀를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및 멘토링 지원 (복지부)
  - '07. 1월 2007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지침)에 정신보건센터 사업 내용으로 해외이주여성 및 자녀 정신건강 상담서비스"신설
  - '07. 3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부족한 학습보충 또는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대학생들이 학습지도·상담 등의 멘토링 지원
- 사회적 편견·차별 해소를 위한 각종 홍보 실시
  - '06. 7월 '국제이해교육 포럼'을 통한 대국민 홍보 (교육부)

- '06. 5월, 6월 KBS 1TV '러브인 아시아' 등 언론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 정책안내 및 국민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실시 (법무부, 여가부)
- 시·도별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21개소 지정·운영을 통해 한국어·한국문화 등에 관한 교육 및 고충 상담 실시 (여가부)

### ▶▶ 인권 제고

- 부모의 불법체류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아동에 대한 교육 및 의료 혜택 부여
- 무료진료 대상에 불법체류외국인 및 그 자녀 포함 (복지부)
  -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시행지침” 개정 ('06.7월 시행)
- 불법체류 초등학교 재학 아동에 대해 한시적 특별체류허가 (법무부)
  - '06. 9월 - 11월 기간 자진 신고한 총 213명(아동 97명, 부모 116명) 대해 '08. 2월말까지 체류 허용
- '06. 9월 이후 초등학교 재학 아동이 학기 중에 그 부모(불법체류자)가 단속된 경우 학기 중 수업 종료 후 30일 이내 자진출국토록 조치 (법무부)

### ▶▶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 다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 제고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세계인의 날(5월 20일) 및 세계인주간을 규정 (19조)

-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과 외국인이 상호 이해·존중하는 분위기 조성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부처)
- '06.10월 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 마련, 지자체 시달 (행자부)
  - 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 및 조례안에 “세계인의 날”운영 등을 규정
- '06.5.28. 이주노동자 축제 개최 (문광부)
  - ※ 서울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하여 3만5천여 명 참여
- 외국인과 국민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 공감대 형성
  - '06. 8월 - '07. 2월 까지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 등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 7회 개최 (법무부)
  - '06.12월 - '07. 2월 일일찾집 행사 등을 개최하여 수익금을 불우 결혼이민자 가정에 전달 (법무부)
  - '06.2월 결혼이민자의 자녀와 교사 간 결연을 맺어 학습 및 생활 지도 실시 (교육부, 지자체)
    - 결혼이민자의 자녀와 도우미 친구 간 결연을 맺어 집단 따돌림 예방
- 학교교육 등을 통한 다문화 교육 강화
  - '06. 2월 - 8월 사회·도덕 등 관련 과목 교육과정에 다문화 이해 존중을 성취목표에 반영 (교육부)
  - '06. 5월 ‘다문화가정 지원 실천사례 나눔 대회’ 개최 (교육부)
    - 자치단체 담당공무원 및 교사들에게 다문화주의 패러다임 전파
  - '06. 11월 초·중등용 ‘다문화 이해’ 교과서 지도자료 보급 (교육부)
    - 다문화가정 교육실태 및 다문화 교육방법론 전파

- '06. 12월 각 대학에 이민학 개설 권장 (법무부·교육부)
- '06. 12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학교생활 안내서'(8개 언어)를 발간하여 한국의 교육제도, 자녀지도법 등을 결혼이민자에게 설명(교육부)
-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다문화 교육 실시 (행자부)
  - '06.9월 - 12월 이·통장, 부녀회장,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순회 교육 실시 (경상남도)

## IV

##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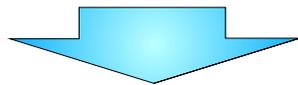
- 이민자 2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편견과 차별 상존
- 이민자 2세에 대해 '혼혈인'·'코시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체가 차별적 요소 내포
  - ※ '06년 사회통계 조사결과(통계청) 다문화 가족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30.6%)임
- 이민자 2세의 경우 학교나 직장 등에서의 차별대우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이나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외국인학교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외국인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 검정고시를 별도로 치러야 하는 불편 초래
- 국민과 외국인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종종 갈등이 발생하고, 인권침해 상황으로 발전하는 사례 발생

### 문제점 분석

- ◇ 사안별·개별적 문제 해결에 치중되어 이민자 2세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대책 마련 미흡
- ◇ 교육·문화·취업 등 생활보호·사회 환경 등 이민자 2세가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 V

### 이민자 2세 사회통합 정책 추진방안



결혼이민자의 자녀를 비롯한 영주자격자·난민·국적 취득자의 자녀 등 다양화되고 있는 이민자 2세 들에게 교육·문화·취업·사회환경 등 다방면에서 사회통합 노력 필요

## ▶▶ 교육 측면

### □ 차별방지 교육 강화

- 혼혈인 등 차별적 용어 사용 금지 추진 (전 부처)
  - 혼혈인에 대한 대체 용어로서 “결혼이민자 자녀” 또는 “이민자 2세” 등의 순화된 표현 사용
-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학력인정 문제 해결 추진 (교육부)

### □ 다문화 교육 강화

- 주요 외국인정책 국가교육기관에 다문화 교육과목 설치 (법무연수원 등 각 연수기관)
- 외국인정책(이민정책)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순회교육 실시 (법무부)
  - ※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실시, 향후 기업체 등으로 확대

- 2007년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지정·운영 (교육부)
  -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결손 지도 및 정체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정책연구 실시(전국 12개교)

□ 이민자 2세 아동에 대한 학습 지원

- 공부방 설치 운영 확대 (농림부, 복지부, 여가부)
  -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및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자녀 학습지원으로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공부방 마련

▶▶ 문화 측면

□ 세계인 주간에 다양한 행사 실시

- 중앙정부, 시·도 단위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법무부·지자체 등)
  - 각 국가의 전통음식 박람회를 개최하여 수익금을 불우한 국민 및 외국인에게 전달 추진

▶▶ 취업 등 생활보호 측면

□ 자활프로그램 강화 (교육부·복지부·여가부·청소년위원회)

- 학교를 중퇴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는 이민자 2세를 위해 검정고시 지도 및 정신건강상담 등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제공

▶▶ **사회 환경 측면**

- 외국인 어린이 홈 스테이 행사 활성화 (법무부·지자체 등)
  - 외국인 아동 등 체류외국인과 결연을 맺어 한국 가정에 초청함으로써 상호이해 증진

**VI**

**정책 추진 체계**

▶▶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구축**

- 법무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기본계획안 작성지침」 통보 ⇒ 중앙행정기관 장은 소관별 기본계획안 작성 ⇒ 법무부장관 취합 ⇒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 ⇒ 계획 확정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5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무부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에 대한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 ⇒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 ⇒ 계획 확정 (기본법 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임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연간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시행계획 수립
- ※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은 ‘07.4.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공포 2개월 후 시행예정

▶▶ 정책 총괄 추진기구 설치

□ 정책 심의·조정기구

○ 외국인정책위원회 (기본법 8조)

- 구성 : 위원장(국무총리)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

※ 기존 외국인정책위원회 규정 (대통령훈령 제171호, '06.5.22.)에 의해 설치되었던 동 위원회는 기본법에 근거를 둔 위원회로 전환됨

- 기능 :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평가 등

○ 외국인정책 실무위원회 (기본법 8조 4항)

- 구성 : 위원장(법무부차관)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

- 기능 :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 정책 총괄 추진기구

○ '07. 5. 10.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직제 개정

- 외국인정책 연구 및 자료수집·위원회 사무처리·외국인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평가업무를 총괄하는 기능 수행

※ '06.5.26.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 시 법무부를 외국인정책 중심부처로 결정 ('06.6.19. 관보 게재)

#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정책

여성가족부

## 1 현황

### □ 국제결혼의 증가로 결혼이민자가족이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등장

- '06년 국제결혼은 전체결혼의 11.9%(39,690건) 차지

※ 국제결혼 비율 추이 : 1.2%('90) → 3.7%('00) → 13.6%('05) → 11.9%('06)

- 지난해 전체 국제결혼 건수는 동포 방문취업제 실시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농림어업종사 남성의 국제결혼은 41%(3,525명)로 증가

※ 국내거주 여성결혼이민자 82,828명('06년 말 기준)으로 이 중 75%는 도시지역에, 25%는 농촌지역에 거주('06, 법무부)

- 결혼이민자 자녀중 학생수는 7,998명,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는 6,695명(83.7%)이며, '03년 이후 국제결혼 급증으로 2010년경부터 학생수도 급증 예상

※ 초 6,795명(85.0%), 중 924명(11.5%), 고 279명(3.5%) , 3세 이하가 27%, 4~5세가 16.4%이며 향후 학교입학 자녀는 지속 증가 예상

### □ 그러나 우리사회의 다문화주의 전통 부재 및 순혈주의 중시 풍토로 인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존재

- 대다수의 결혼이민자들이 문화적 차이, 언어장벽, 사회적 편견 등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

※ 결혼이민자의 30.2%가 한국인들이 이민자와 그 가족을 차별한다고 느낀 경험 있다고 응답('06. 여가부 결혼이민자 실태조사)

-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는 열악한 양육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 부족, 사회적인 편견 등으로 **사회의 주변인(marginal man)**으로 머물 가능성
  - 특히, 결혼이민자가족의 밀집 지역인 농촌 등은 계도화 우려

## 2

## 문제점

### □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 부족

- 부모의 자녀 지원 능력 부족, 열악한 양육환경, 사회적 편견 등으로 결혼이민자가족의 아동은 학습능력 및 사회성 부족
  - 특히, 유아기의 언어 습득, 또래 문화 경험 등을 위한 지원 미흡
    - ※ 결혼이민자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율은 27.3%로, 일반가정 아동의 56.8%에 비해 이용율이 절반 수준('05, 여가부)
    - ※ 18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결혼이민자가족 중 57.5%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05, 복지부)
- 임신단계부터 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등 성장주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
  -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므로 언어 발달 지체
  - 학령기에 의사소통미흡 및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또래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 ※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17.6%가 집단따돌림을 경험하였으며, '엄마가 외국인' (34.1%)이라는 사유가 가장 높음('05, 복지부)
  - 청소년기에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폭력성 또는 과잉행동장애(ADHD)를 보이는 등 정서장애

### 3 추진정책

#### □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결혼이민자 자녀 지원(교육부)

-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교육소외 방지를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발표('06.5.1)
- 다문화교육 시범학교 지정·운영
  -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용 교사 상담자료, 다언어 학교생활 안내자료 제작·배포('07.1월), '다문화교육 교사 연수센터' 지정·위탁운영('07.1월) 예정

#### □ 결혼이민자 자녀 복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복지부, 농림부)

- 「2006년 아동복지사업안내 지침」 개정('06.2월), 결혼이민자 자녀가 지역아동센터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 이용실적 : 33명('05년) → 115명('06.3월) → 136명('06.6월)
- '농산어촌 귀향 멘토링'으로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06.6~8월)

#### □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 <아동발달 주기에 맞는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 임신기(모성보호, 영양지원) → 출산기(자국출신 산모도우미 파견) → 영·유아기(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아동양육방법 부모교육, 다문화교육) → 학령기(방과후 학습, 교사 연수 등)
- 특히, 결혼이민자자녀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및 다문화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인적 자원으로 육성

○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모성보호 가이드」 발간·배포

(여가부, '05.12월)

- 임산부가 알아야 할 상식, 출산 전 준비사항, 출산 후 관리, 아기 돌보기, 가족계획 등 일반적으로 산모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알기 쉽게 정리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4개 언어로 각각 500부씩 총 2,000부 제작

※ 뒷편에 부록으로 국문 수록

○ 찾아가는 산전·후 도우미 서비스 제공

- 임신·출산, 자녀양육 지원 등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멘토 역할 수행
- 특히, 한국 체류기간이 짧고 한국어 구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교육생들에게 한국인 강사보다 의사소통이 원활한 선배 여성결혼 이민자들을 강사 인력으로 양성하여 파견

※ 임신·출산, 자녀양육, 거리, 교통문제 등으로 시설 접근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 자녀지원, 출산 전후 도우미 지원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2006년 총 2,983건 지원)

○ 아동양육도우미 파견

- 취학 전 영·유아 또는 저학년 아동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 도모
  - 아동의 학습 지원, 학교생활 준비, 다문화의 이해 교육, 인성 발달 지원, 영양 지원, 양육 상담 등
- 지원 대상 가정 : 총 2,160가정(지자체별 사업비 편성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 0~12세 자녀가 있으며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정(단, 기타 가족구성원의 동의 필요)

※ '결혼이민자'는 국적 취득 전·후를 모두 포함하며 국적 취득 전의 경우에도 비자 유형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도우미는 해당 사업시행지역 내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전직 교사 (유치원 및 보육교사 포함),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사회활동가, 자원봉사자, 여성결혼이민자 중에서 선발하여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일정수준의 교육이수후 파견(도우미 1명당 주당 5개 가정, 각 3회 방문 원칙)

#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제도

통일부

## 1. 새터민 국내입국 현황

- '06년 연간 국내입국자 수가 2천명을 넘어섰으며 금년 2월 누적 입국자 1만명 도달

※ 국내입국 인원 : '99년(148명), '02년(1,139명), '06년(2,019명)

### < 국내입국 통계 >

(단위:명)

구분	'89이전	'90~'98	'99	'00	'01	'02	'03	'04	'05	'06	'07.2현재	합계
인원	607	340	148	312	583	1,139	1,281	1,894	1,383	2,019	305	10,011

- 최근 입국인원 급증으로 초중고 학령기 새터민 청소년수도 지속 증가
  - '07.2 사회거주 새터민중 초중고 학령기 청소년은 13.1%
  - ※ 청소년 증가 : 592명('03) → 1,011명('05) → 1,178명('07.2)
  - ※ 새터민 증가 : 3,662명('03) → 6,743명('05) → 9,023명('07.2)

## 2. 새터민 정책 기본 방향

- 정부는 새터민 문제를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처리
- 해외체류 탈북자가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전원 수용하되, 탈북을 유도·조장하지는 않음.
  - 인도주의 원칙아래 관련 국내법령과 국제법에 부합되게 탈북자를 보호하고 국내에 수용

- 국내입국 새터민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

### 3. 청소년 정책 방향

#### □ 일반학교 중심의 통합교육 기반 강화

- 학교 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 도모, 새터민 학생의 학교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매뉴얼 보급

#### □ 부적응 청소년의 적응능력 기반 강화

- 한겨레학교는 부적응 청소년의 교육안전망 역할을 하는 디딤돌 학교 모델로 정착
  - 기술계학교 편입학 및 위탁교육을 통해 취업수요에 대처
- 지역사회에 맞춤형 청소년 종합지원 모델 개발

### 4. 청소년 교육지원제도

#### □ 학력 확인 및 입학/편입학

- 북한 또는 제3국 체류 시 획득한 학력의 확인
- 동 학력 확인에 근거하여 각급학교장이 연령/수학능력을 감안하여 입학/편입학 조치

#### □ 교육 지원 대상

- 새터민 본인
  - ①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편입학한 경우 만25세 미만인 자
    - ※ 연령산정은 각급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날을 기준으로 함.

②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편입학한 경우는 만35세 미만인 자(2005.2.28 이전 보호결정자)

※ 국내의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산업대학 및 기술대학(기능대학) 편·입학자는 연령제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음

③만35세 미만으로 거주지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2005.3.1 이후 보호결정자)

※ 국내의 산업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입학자는 연령제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음

○ 자녀

- 새터민 자녀로서 부 또는 모가 1993.12.11 이전에 보호결정 되고, 1993.12.11 이전에 출생한 자

<대상별 대학교육 지원내용>

보호결정일	본 인	자 녀
① 1993.12.11 이전	무 상 (국립대 면제, 사립대 대학·국가 1/2씩 부담, 이하 동일)	무상 (1993.12.11 이전출생자)
② 1993.12.12 ~ 1997.7.13	무 상	지원없음
③ 1997.7.14 ~ 2005.2.28	· 입학시 만35세미만: 일반대학 · 나이제한 무: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지원없음
④ 2005.3.1 이후	거주지보호기간중(5년) 또는 고등학교 졸업 5년이내 입·편입학한 경우에만 지원 · 입학시 만35세미만: 일반대학 · 나이제한 무: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정 받은 교육훈련기관	지원없음

○ 지원 대상학교 : 정규교육과정 중·고·대학 및 전문대학

○ 지원기간 : 편입학 후 전문대학 2년(단, 3년제 과정은 3년), 대학 4년, 의학·치의학·한의학 계통은 6년

## □ 학교의 편·입학

- 거주지 학군내 근거리 중·고등학교 및 대학당국의 편·입학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학력확인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 내지 제98조는 새터민의 경우에도 학력 인정의 조건
  - 초등학교 졸업 인정 : 총 6년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
  - 중학교 졸업 인정 : 총 9년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
  - 고등학교 졸업 인정 : 총 12년의 학교교육과정 이수
- 2004.2.17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96조 내지 제9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급학교의 학칙(개정전 :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개정 2004.2.17>

**제92조**(준용) ③제75조의 규정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는 “고등학교”로, “제68조 및 제73조 제1항”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으로 본다.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서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3.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 대학(전문대이상) 공납금 지원

- 통일부가 해당학교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
- 교육보호대상자의 편·입학이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납금 지원
  - 국·공립학교 : 해당 학교가 입학금, 기성회비, 수업료 전액면제
  - 사립학교 : 해당학교가 통일부에 입학금, 기성회비, 수업료의 50%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며, 나머지 50%는 학교에서 면제
  - ※ 신청서류 : 국고보조금신청서, 성적증명서(해당 학교에서 통일부에 신청)
- 공납금 지원 제한
  - 국내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자
    -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후 또는 재학중 타 대학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기 지원(따라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시 기지원 여부 확인 요망)
    - ※ 타대학에 입학할 경우 편입학금도 지원 제외(본인부담)
  - 새터민 본인으로서 직전학기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 연속 2회이상 70점 미만인자
  - '93.12.11 이전 등록된 새터민 자녀의 경우,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 70점 미만인 자

## <'07 새터민 청소년 지원계획>

김형기 사무관(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1 새터민 청소년 동향

#### □ 새터민 청소년 현황

- '06. 11월말 기준 전체 입국자 약 9,500명 중 6~20세는 약 1,200명(12.6%) 수준  
※ 자료 : 통일부
- 교육기관별 현황('07. 4. 1. 기준)
  - '06년 대비 전체 교육지원 청소년 28.3% 증가(791명→1015명)
  - '06년 대비 일반학교 재학생 35.6% 증가(444명→602명), 학교수 190교→256교

구분	한겨레학교	일반학교			평생교육시설 및 민간단체	합계
		초	중	고		
인원(명)	85	341	181	80	328	1,015
		602				
교육분담율(%)	8.4	59.3			32.3	100
교육기관 수	1	113	91	52	18	275
		256				

- 일반학교 재학(지역별·학교급별) 현황('07. 4. 1. 기준)
  - 약 70%의 학생(602명 중 419명)이 수도권 학교에 재학
  - 5명 이상 재학 학교(총 23교, 서울 15교)는 대도시 임대아파트 주변 집중
  - ※ 교복투사업 대상학교 총 6교(초 4교, 중 2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초	139	32	6	30	6	8	9	58	4	6	17	3	4	9	6	4	341
중	93	10	4	13	4	7	2	29	1	0	8	1	2	5	0	2	181
고	51	10	4	3	0	0	0	3	2	0	1	1	0	1	4	0	80
계	283	52	14	46	10	15	11	90	7	6	26	5	6	15	10	6	602

※ 경기 안성 삼죽초등학교 25명 포함; 한겨레중고등학교 학생(85명) 제외

○ 중도탈락 현황

- 중·고 연령층 취학 저조{초, '95~'00년생 102.3%; 중, '92~'94년생 68.7%; 고, '89~'91년생 58.0%}

※ 취학률 : 학교급별 취학적령(만6~11세, 12-14세, 15-17세) 기준 새터민 수와 학교급에 관계없이 재학중인 새터민 수의 비율

- 새터민 청소년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지원 미흡으로 중등교육단계에서 중도탈락생 증가(초 2.8%, 중 10.1%, 고 12.8%) ☞ 【붙임 1】 참조

※ 중도탈락률은 '06. 5월 현재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추정

※ '05학년도 전체 학생 중도탈락률 : 중학교 0.8%, 고등학교 1.4%

□ 기타 동향

○ 20세 이하 입국자 입국 소요기간 단축

- 전체 새터민의 평균 입국기간은 약 3년, 20세 이하는 약 2년 소요
- 탈북 이후 6개월 이내 입국자 점차 증가하는 경향

※ 0~20세 6개월 내 입국자 : 20%('02)→30%('03)→32%('04)→39%('05)→46%('06)

< 경기일보 보도('07. 3. 19.~4. 9. 10회 연재) >

- 대안학교 : 재정난 심각, 하나원에서 대안학교 편입학 안내 부재
- 한겨레학교 : 본관 신축 지연, 학력심사위 미설치
- 삼죽초 : 새터민 눈높이 교재 필요,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지위 필요
- 중도탈락 (대)학생 속출 : 대학과정 지원책 부족

## 2 | '06년 사업평가

### □ 주요 사업의 성과

#### ○ 한겨레학교 설립 지원

- 한겨레학교(특성화학교, 자율학교) 개교('06. 3.)
- 한겨레학교 본관 신축공사비 지원
- ※ '07. 4. 10. 현재 공정률 67%

#### ○ 민간단체 지원 및 교원연수 실시

- 새터민 청소년 교육지원 민간단체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06. 9.)
- ※ 14개 단체 중 지원 신청한 10개 단체(224명)에 2.75억원
- 일반학교·대안학교 교사 공동연수 실시('06. 11. 9.~11.) : 30명

#### ○ 정책연구 추진('06. 9.~'07. 2.)

- 하나원 재원 청소년 학력·심리검사, 일반학교 학업성취도를 처음으로 조사
- ※ 일반학교 중학생(21명) 학업성취도 : 100명 중 73등 수준
- 난민에서 이주민으로 성격이 전환된 점을 고려할 필요

## □ '06년 사업의 한계

- 한겨레학교 재정지원에 주력
  - 본관 신축비용 지원 등 물적 지원에 집중
  - 학사운영과 학력인정 등 새터민 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개선 미흡
- 민간단체 지원의 효과 미흡
  - 운영비 성격의 재정 지출로 사업효율성 미흡
  - 지원시기 지연으로 집행상 애로, 사업성과 평가 부재
- 학교교육 대응체제 미흡
  - 교육분담률이 약 60%임에도 일반학교에 대한 관심 부족
  - 일반학교 내 교육지원 미흡으로 중등교육단계에서 높은 중도탈락
- 현안 위주 대응으로 거시적 접근 미진
  - 새터민 관련 기초연구 등 인프라 구축 미흡
  - 새터민 입국자 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한 대응체제 부족

## 3 | '07년 사업 추진방향

### □ 추진방향

- 새터민 교육기관간 역할 분담 체계화
  - 일반학교 중심으로 통합교육 관점에서 근본적 수용체제 마련
  - 한겨레학교는 일반학교 편입학을 위한 디딤돌(steping stone)학교로, 민간단체는 일반학교와 유기적 연계기관으로 발전

○ 학교교육 대응체제 마련

- 새터민 입국자 급증에 대비 일반학교 중심으로 사전 준비
- 교원 전문성 제고를 통해 새터민 청소년의 특수성과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지원 강화

○ 제도개선 사항 등 발굴 지원

- 남한 학생을 전제한 관계법령 등을 새터민 청소년 특수성이 고려되는 제도로 개선
- 새터민 청소년의 생활적응력 향상 지원체제로 개선

○ 종합적 관점에서 사업 추진

- 통일부 등 관계부처 사업과 연계
- 연구지원, 정보제공, 인식변화 등 교육인프라 구축 병행 검토·추진

<새터민 청소년 교육지원 과제(예시)>

▪ 단기과제

- 일반학교 : 교사용 매뉴얼 보급, 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 교원연수
- 한겨레학교 : 본관 준공, 한겨레학교 운영지원 관계부처 협의회
- 민간단체 :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위탁교육
- 인프라 : 학력인정제도 개선, 교육보호담당관제, 정보교류

▪ 중·장기과제

- 일반학교 : 지역단위·학교단위 지원체제 구축
- 한겨레학교 : 새터민 초기 적응교육 관련 기능 지원
- 민간단체 : 일반학교와 연계기능 강화
- 인프라 : 인식변화, 연구지원기능 강화

## 4 | '07년 사업 추진방안

### □ 학교 및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체제 개선

#### 가. 학력인정제도 개선

##### ○ 현황 및 문제점

- 북한에서 6년, 9년, 12년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만 초, 중, 고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 내지 제98조)

※ 고등교육 이수한 경우에는 초·중등 수학연한과 관계없이 상응한 학력 인정(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

- 한겨레학교 학력조정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학력 조정(학년 배정)  
⇒ 일반학교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곤란으로 디딤돌학교로써의 역할 수행 곤란

##### ○ 관계법령 개정

- (가칭)학력평가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수학정도 및 능력, 연령 등을 종합심사하여 학력인정(학년배치)
- '학력인정 주관학교' 위임근거 마련과 전문평가기관(예 : 교육과정평가원)과 연계하여 기본학습능력 등에 대한 인정체제 마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학력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학력인정기준 및 절차) ① 보호대상자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3.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나. 새터민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높은 중도탈락률을 보이는 일반학교 부적응 새터민 청소년을 위해 한겨레학교 이외의 대안적 교육지원기관 필요
- 개선방안
  - 시도교육청에서 새터민 교육지원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활용하도록 지도·권장

## 다. 직업역량 및 진로지도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높은 연령과 낮은 학업성취 수준을 고려하여 취업훈련 제공 필요
  - 대학 특례입학은 용이하나 수학능력 부족 등으로 다수가 중도탈락하여 (자발적) 실업, 범죄 노출 등 남한 사회 정착에 한계
- 개선방안
  - 한겨레학교에서 전문계고 등 편입학 유도과 시행중인 위탁교육 활성화
  - 새터민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체계적 진단 후 적절한 진로지도(직업안내, 전문대 진학지도 등) 강화

## 라. 교육보호전담관제 도입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신변·취업·거주지 보호담당관의 초기 교육지원 및 적응지원 역할 미비
  - 통일부에서 초기 정착지에서의 교육지원을 위해 동 제도 도입 요청
  - ※ 정착지학교에 편입학되었음에도 취학정보 부족으로 장기결석 사례 발생

○ 개선방안

- 새터민 청소년 밀집지역(10개 지역 내외) 교원 등을 전담관 지정하여 교육정보제공, 학생·학부모 상담, 지역협의회 참여 등 역할 수행
- 시도교육청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아 지정하고 교육프로그램 실행 사업을 통해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 학교교육 지원 강화

가. 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 시행

○ 추진목적

- 자발성과 헌신성을 지닌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동력 제공
- 새터민 청소년용 교육프로그램 개발·활용 지원

○ 사업개요

- 공모내용 및 지원내역

· 필수과제 : 교사용 매뉴얼 개발·보급

※ 교사용 매뉴얼 보급사업 평가 후 학부모·학생용 매뉴얼 보급 추진

· 자율과제 : 15개 과제 내외(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자율과제 예시 : 진단평가지, 사례관리, 학부모교육, 멘토링, 특별학급, 또래교사, 남한학생에 대한 새터민 이해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정보교류 등

- 참가대상

- 교사 자율 연구모임
- 새터민 교육 지원인력 등

※ 전문 연구진(교수, 연구원 등)은 교사 등과 함께 공모 가능(개별 공모 지양)

- 지원금액 : 과제당 10백만원~30백만원

○ 사업일정

- 사업공고('07. 5.) 및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지원('07. 6.)

## 나. 교원연수 지원

### ○ 추진목적

- 새터민 학생 담임 및 교과교사의 전문성 향상
- 교사 전문성 제고로 새터민 학생의 남한교육 적응력 제고

### ○ 연수개요

#### - 연수내용 및 시기

- 오리엔테이션 : '07. 6.(4시간, 밀집지역 중심으로 2회 실시)
- 직무연수 : '07. 7.~8.(1회)

※ 직무연수 내용 : 새터민 교수학습방법(실습 중심), 학교부적응 대처방안, 학부모교육, 남한학생에 대한 새터민 이해교육 등

#### - 연수대상

- 일반학교 담임교사 · 교과교사, 교장(감)
- 새터민 학생 교육에 관심있는 일반교사, 민간단체 교사 등

## 다. 학생 지원

### ○ 멘토링, 또래교사제 등을 통한 개인별 지도 병행

- 교사용 매뉴얼 등을 통해 멘토링(교사 · 대학생 등), 또래교사제(먼저 입국한 새터민 청소년) 등 다양한 지도방법을 안내하고 시도교육청, 학교별 자율시행토록 지도
- 교원연수 등을 통해 학생지도 우수사례 확산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급 : 방과후학교팀 추진사업(기 지급)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400명 내외)가 아닌 새터민 학생(약 200명 추정)에게도 자유수강권 지급(30만원/1년)
- 이용방법 : 학교 개설강좌, 위탁강좌, 대학생 멘토링 등에 사용

## □ 민간단체 지원 효율화

### ○ 추진목적

- 민간단체의 교육지원역량 강화로 새터민 청소년 학업능력 향상 도모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 사업일정 : 사업공고('07. 5.), 선정·지원('07. 6.)
- 소요예산 : 300백만원(예정)

### ○ 운영방안

- 우수사례 보고회 개최 및 포탈 사이트(Portal Site) 구축 시 우수 사례 탑재하여 공유

## □ 새터민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충

### ○ 정책연구 지속 추진

- 연구목적 : 실태파악 및 학교부적응 감소와 체계적 진로지도 방안 마련
- 연구제목 및 기간 : 「새터민 청소년 진로 실태조사 연구」, '07. 6.~

### ○ 홍보 강화

- 사업내용 : 수기(새터민 청소년 및 학부모, 교사, 자원봉사자 등)·슬로건(모든 청소년) 공모전, UCC(User Created Contents) 공모전(모든 청소년) 등을 통해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 사업일정 : 사업공고('07. 6.), 심사·선정('07. 8.)

## 【붙임 1】 새터민 학생 중도탈락 현황

### □ '06학년도 중도탈락률

구분	초	중	고	계
'06. 5. 재학생 수	248	168	78	494
'06학년도 중도탈락생	7	17	10	34
<b>중도탈락률</b>	<b>2.8%</b>	<b>10.1%</b>	<b>12.8%</b>	<b>6.9%</b>

※ 중도탈락률 = 학교급별 '06학년도 중도탈락자 총수 / ('06. 5. 현재 학교급별 일반학교+한겨레학교+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총수)

※ '05학년도 전체 학생의 중도탈락률 : 중학교 0.8%, 고등학교 1.4%

### □ 중도 탈락 사유별 현황(한겨레학교, 평생교육시설 포함) ( '00~'07. 2.)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부적응	1 (중)	3 (고)	6 (중4, 고2)	5 (중3, 고2)	7 (초1, 중6)	13 (초1, 중9, 고3)	7 (중5, 고1, 평1)	16 (초3, 중8, 고5)	58 (56.9%)
장기 결석				4 (초1, 고, 평2)	2 (초, 고)				6 (5.9%)
경제적 사정					3 (중2, 고1)			2 (중, 고)	5 (3.9%)
검정 고시		1 (중)	1 (고)		1 (중)	4 (중, 고2)	1 (초)	8 (중7, 고1)	16 (12.8%)
가사				2 (초, 중)		2 (중1, 고1)	1 (고)	2 (중, 고)	7 (6.8%)
질병				1 (중)					1 (1.0%)
비행		1 (중)							1 (1.0%)
기타						5 (중)	2 (초)	6 (초4, 고2)	13 (11.7%)
<b>계</b>	<b>1</b>	<b>5</b>	<b>7</b>	<b>12</b>	<b>13</b>	<b>24</b>	<b>11</b>	<b>34</b>	<b>107 (100%)</b>

※ 2004년도는 9월 기준; 2007년 조사는 2006학년도('06. 3. ~'07. 2.) 중도탈락생 조사

\* 평 : 평생교육시설

**【붙임 2】 새터민 교육지원 민간단체 현황('07. 4. 1. 현재)**

연번	단체명	소재지	운영형태	교육내용	'07년 인원(명)	'06년 인원
1	한꿈학교	경기 양주	생활공동체 대안학교	중고 검정고시	21	18
2	하늘꿈학교	충남 천안	생활공동체 대안학교	초중고 검정고시	26	26
3	여명학교	서울 관악	대안학교	중고 검정고시	35	30
4	셋넷학교	서울 영등포	대안학교	중고 검정고시	24	26
5	자유터학교	서울 관악	성인대상 야학교육	중국어, 영어, 문화 등	25	30
6	좋은씨앗	서울 송파	그룹홈 공부방	대입준비 대학생반	25	20
7	남북문화통합교육원 (한누리학교)	서울 양천	지역아동센터	보충학습 현장학습	17	17
8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서울 노원	방과후 공부방	보충학습 현장학습	33	15
9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서울 양천	방과후 공부방	보충학습 현장학습	32	27
10	가양 7복지관	서울 강서	방과후 공부방	방과후공부방, 개인교습	47	-
11	다리공동체	경기 안산	생활공동체	방과후공부방, 개인교습	15	15
12	꿈사리 공동체 (구. 마자렐로센터)	서울 양천	생활공동체	생활교육,인성 교육 진로탐색	5	-
-	마자렐로센터	서울 영등포	생활공동체	직업훈련	-	6
-	돈보스꼬청소년센터	서울 영등포	직업훈련시설	교과과정 직업훈련	-	3
-	아힘나평화학교	경기 안성	생활공동체 대안학교	중고 검정고시	-	6
-	남북문화통합교육원 (상담센터)	서울 영등포	진로진학상담센터	진로진학 상담	-	20
계	<b>12개 단체, 305명</b>					259

※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해 현황조사

# 토 론 문

1. 다민족 · 다문화 사회와 교육(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여성  
의 자녀를 중심으로) ..... 68

토론자: 한건수(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2. 이주민자녀의 교육권 ..... 73

토론자: 류혜정(법부법인 지평 변호사)

3. 새터민 청소년의 인권 ..... 76

토론자: 이우영(북한대학원 대학교)

## 다민족·다문화 사회와 교육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녀를 중심으로-

한건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이주민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인적구성의 변화는 한국사회에 잠재한 차별과 인종적 편견의 문제를 노출시켰고 이에 대한 자성적 논의로 발전해 나왔다.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로의 성숙을 갈망하는 제안들은 이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문화적 권리의 문제로 확장시키면서 최근 '다민족·다문화' 사회 담론으로 발전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1.7%(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발표)가 이주민으로 집계되는 한국사회의 현실은 현 단계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과 특징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확산되는 다민족·다문화 사회 담론도 정치적 구호로서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쯤 성찰할 단계가 된 듯 하다.

한국사회의 현실을 다인종·다민족·다문화로 풀어나가는 담론들은 현 단계 우리 사회의 문제를 앞으로 다가올 사회적 변화와 한국 사회의 이행 가능성에 주목하며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사용되는 개념의 무게에 비해 그에 대한 실체적 자료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은 일정한 괴리를 보이는 것도 현실이다. 최근 붓물처럼 쏟아지는 다문화 사회 관련 정책이나 논의들은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이행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외국 수준의 정책적 고민이나 이슈를 모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심들이 쏟아내는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정부나 사회단체의 “임기응변식” “뺨질하기 식” 대책들은 한국사회의 장기적 전망이 부재한 상태로 일회성 사업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

이주노동자 자녀나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녀(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한국 생활이나 교육에 관한 문제 제기는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내 거주 외국

인 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실태조사에서 비록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주노동자 자녀가 한국 생활에서 경험하는 인권침해나 한국 사회의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는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우리 정부는 특별한 관심이나 정책적 고려를 보이지 않다가, 2006년 하인스 워드의 방한을 계기로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일시적’이고 ‘홍분된’ 논조에 밀려 급조된 정책과 사업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단일민족과 순수혈통을 강조하는 폐쇄적 민족주의와 순혈주의의 허구성에 대한 비판적 주장들이 제기되었고 구체적으로는 우리 교과서가 이러한 순혈주의와 단일민족론에 근거한 폐쇄적 민족주의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교과서 지문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개정을 약속하기도 했고, 실제 초등학교 교과서에 ‘혼혈아’와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기도 했으며, 중학교 3학년 도덕교과서에는 타문화에 대한 편견을 지적하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급조된 반응들의 문제점은 실제 기존 교과서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에 급급해서 우리 교육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결혼이민자 자녀나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어떤 교육목표와 교육환경에서 학습하고 자라나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오늘 토론하게 된 이주노동자 자녀나 ‘다문화가족’ 자녀의 삶에 대한 고려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점과 함께 본질적인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주노동자 자녀의 경우, 발표자가 제시한 몽골학생들의 실태는 본국으로 귀환해야 하는 학생들이 한국에서 한국식 교육과 문화를 습득함으로써 ‘문화적 난민’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몽골어와 몽골문화, 몽골역사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몽골학생들이 그렇다고 한국사회에 정착할 길도 없는 상태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되었다는 지적이

다. 이런 점에서 재한몽골학교의 의미와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제시된다. 발표자의 지적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정책적 기초를 가져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볼 수 있다.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한국에서 생활하며 성장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자녀의 삶의 비전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본국으로 귀환할 역량을 과연 공교육 체제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문제는 '학습권'이라는 아동인권의 가치와 목적에 대한 고민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따돌림의 실체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필요가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과 따돌림의 유형과 원인은 명쾌하게 분류되고 해석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필자는 2003년 이주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에서 한 몽골학생이 계단에서 다른 학생들에 의해 떠밀려 이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는 학교에서 면접을 했다. 해당 학생과 학부모, 교사, 동료 학생들과의 면접에서 필자는 의도적인 가해 행위라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초등학생들간에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을 혹시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한 바 있다. 물론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겪는 놀림과 차별의 실태에 대해서는 2003년의 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이자 가치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사회가 '계층이나 계급간의 차별과 갈등이 본질'인 사건들을 '인종의 색을 덧칠함으로써 은폐'하는 '인종화된 사유양식'의 문제를 갖고 있듯이 우리 사회도 '민족과 인종에 의한 차별'로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성찰을 할 필요도 있다.

셋째, 이주청소년들이 올바른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한국 사회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한국 사회 전반의 다문화적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있는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두 번째 발표인 '다문화가족' 자녀의 문제는 이주청소년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면서 차이를 갖기도 한다. 피부색과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과 따돌림 같은 문제는 공통적이지만, 국민국가의 틀 안에서 두 집단은 상이한 정체성

을 형성해 나가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국민이라는 국민정체성을 기본적으로 형성해 나갈 것이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국민 국가의 틀을 벗어나는 초국가적 정체성(transnational identity) 형성의 문제도 논의할 수 있으며, 한국 국민으로서의 국민정체성과 어머니의 모국과 관련된 정체성을 동시에 형성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실체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가 이들의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이나 ‘국민정체성(national identity)’의 형성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근본적 고민과 논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현실은 현장에서의 ‘응급구조’에 머물러 있다. 한국생활의 적응지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책들은 한국문화에 대한 ‘동화주의’적 지원에 머물고 있다. 예를 들면 장기적 비전의 공유가 없기 때문에 많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어머니의 미숙한 한국어 능력 때문에 ‘언어장애’를 갖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 ‘말이 늦는’ 자녀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좀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자녀의 언어습득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어머니가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저하된다는 해석은 부분적 설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 내의 다른 구성원들 역시 ‘가족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실제 말이 늦는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가족구성원과 가족생활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보면 아버지나 다른 가족이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기여부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관계나 가족생활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혼이민자 여성의 한국어 능력을 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이것은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이 약한 원인을 이주여성에게만 전가하는 무책임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말이 늦은’ 아이들을 ‘언어장애’로 ‘질병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언어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가의 활동이 대중화되면서 말이 늦고 빠른 다양한 성장단계가 지나치게 질병화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취학연령에 다다른 자녀들에 대해 지역사회나 교육담당자들의 변화된 인식이 절실하다. 2005년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학교생활과 학업성취에 관한 시사

특집 프로그램에 인터뷰를 한 현지 교사가 “아이들에게 하자가 없어요!”라는 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교사들의 인식전환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대책에 대한 용역보고서(2006년)는 여전히 초보적인 문제의식에 머물러 있다.

이주노동자나 다문화가족 자녀의 삶과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증요법이 아닌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자녀나 가족,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실태파악과 이를 토대로 한국사회의 장기적 전망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 정책적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 이주민 자녀의 교육권

- 국제기준 중심으로 -

류 혜 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문화적인 배려나 통합에 관한 정책의 유무나 그 타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교육 접근권에 관한 제도보장의 흠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구체적인 적용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이하 'ICMW')은 part 3 제30조, 제43조 제1항에서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부모 또는 자신의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교육접근권을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오로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건으로 하여 초등학교에 대한 입학 또는 최초의 전입학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ICMW가 표방하는 내외국인의 동등한 교육접근권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이 이미 가입하여 발효 중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CESCR) 제2조, 제13조,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CCPR) 제24조, 제26조, 인종차별철폐협약(CERD) 제5조, 아동권리협약(CRC) 제2조, 제28조, 제29조가 천명하는 차별금지 원칙에도 저촉되는 것입니다. 교육제도에 관한 접근권 조차 동등하게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설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명시적인 교육접근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선 학교의 학교장 재량으로 입학 허가 여부가 결정되기 마련인데, 이 경우 학교장이 다른 학생이나 학부모의 편견을 사례로 들면서 입학 허가를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한 현실적인 불복 또는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부모의 미등록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협박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헌법에서 내외국인의 동등 대우에 관한 기본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개별적인 법률이나 행정규칙의 위헌성 또는 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내외국인 동등한 교육접근권이 법률로써 명문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CESCR) 제13조 및 아동권리협약(CRC) 제28조가 규정하는 교육에 대한 권리를 넘어서서 ICMW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한국 정부의 현지 교육제도에 대한 적응 지원 및 배려 의무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인종적·민족적·언어적·문화적·종교적 장벽으로 인하여 현지의 교육제도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저미등록이주노동자 가정이 저소득인 경우, 부모나 아동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등 사회적으로 불리한 요인이 이중·다중적으로 작용하는 다문화가정일 것입니다. ICMW 제45조 제2항은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이 현지 학교제도에 용이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그 실제적인 논의과정과 ICMW 및 CRC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과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특별히 고려한 경제적·사회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의 이행보고서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의견에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정의 아동에 대한 교육 및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에 관한 입법 미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이에 관한 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지 않거나 현저히 미흡한 정도에 그치는 점은 오늘 발표 내용에 미루어 보더라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실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5년 12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담고 있고,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 시행을 위한 후속절차인 대통령령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위 규정은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법제 및 정책 실현의 수준은 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조약이나 국제적으로 승인된 법규의 기준에 비추

어 현저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명문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 새터민 청소년의 인권

이우영(북한대학원 대학교)

## 1. 새터민 청소년 문제의 본질

- 새터민 가운데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현 단계 새터민 문제의 중요한 특징임.
- 새터민 청소년은 새터민 문제 일반과 청소년 문제 일반이 복합되어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새터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담당부서가 다양한 반면 일관된 논의체계는 부족
  - 통일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자치단체, 가족청소년부, 지방자치단체, 복지부, 경찰, 국정원 등
- 반면 새터민 청소년 문제를 강조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음.

## 2. 새터민 청소년 인권 문제를 위한 방안

### 가. 담당부처의 정비

- 다양한 부처들이 새터민 청소년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바, 주무 부처와 연계 부처를 정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근본적으로 새터민 문제와 관련된 정부내 업무 분장을 재조종할 필요가 있음.
  - 통일부가 주무부서인 것이 효율적인가 여부
  - 이주민과 귀국인을 포함한 주민청의 신설 여부 검토

## 나. 실태 조사

- 청소년의 숫자 뿐만 아니라, 학력을 포함한 대상의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함.
  - 육체적, 정신적 건강 포함
  - 가족 관계 등
- 국내 적응 단계에서 청소년이 겪는 문제를 분야별로 정확히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지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공적 부분과 사적 영역 분리 필요
  - 정책적 인권 침해
-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주변의 인식 조사도 필요함.

## 다. 지원 시스템의 정비

- 현재의 복잡한 지원시스템을 대상 청소년을 기준으로 재정비함.
  - 학습, 취업, 심리 지원 등으로 세분화
- 민간부분과 정부부분의 협조시스템을 점검하고 재정비함.
  -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정부가 해야할 부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포함
  - 정부 이외의 공공부분 검토

- 한겨레학교의 위상 재정립
  - 타교육기관과의 관계
- 현재 학력기준의 평입제도를 연령 기준으로 전환할 것을 고려함.
- 대상별 차이에 따른 정책을 추진함.
  -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 노동 청소년
- 다른 청소년 대책과의 형평성 고려

#### 라. 적극적인 홍보의 실천

- 언론기관 등과 협조하여 새터민 청소년의 상황을 소개하고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유도함.
  - 부분적인 부작용 감수
- 특히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회적 성찰의 계기로 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